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가슴기살균제 배상안

업데이트 관련 안내

1.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당사 배상규정 수정

옥시레킷벤키저는 2018년 4월 5일 정부관계자 및 정부 피해판정 의료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 3차 피해 조사부터 가슴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판정기준의 변경이 당사의 배상절차 및 배상안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사 배상규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2017년 12월 14일 또는 그 이전에 태아피해 인정을 받으신 특정 태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당사의 배상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상해 'D 그룹' 신설

(1) D 그룹 판단 기준

당사는 정부가 가슴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발표한 1단계 또는 2단계 옥시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을 2016년 7월 31일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배상액 산정을 위해 당사의 배상지원 사무국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폐질환으로 인한 피해자의 전신장애율을 A, B 또는 C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판정기준이 변화된 것을 확인한 바, 당사는 피해자가 **1) 영상의학, 2) 폐기능 검사 결과, 3) 임상기록**에 관한 아래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D 그룹으로 분류하고, 피해자가 어느 한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배상규정의 기준에 따라 A, B 또는 C 그룹으로 배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영상의학

피해자에 대한 고해상 전산화단층촬영(HRCT)이나 X-ray 판독에서 피해자의 폐에 어떠한 이상 징후나 소견이 없는 경우

2) 폐기능 검사 결과

피해자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가슴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일산화탄소 폐확산능 수치(DLCO),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노력성 폐활량(FVC) 수치가 모두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인 경우

3) 임상기록

피해자의 과거 의료기록에서 가슴기 살균제 관련 임상상. 즉, (i) 급성 혹은 아급성으로 생긴 호흡곤란, 기침, 또는 호흡부전 증상, (ii) 기흉, 피하 기종 등의 폐압력 손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D 그룹 피해자에 대한 배상

당사는 D 그룹에 해당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7,500 만원을 정액으로 배상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위자료, 배상적격 비용, 일실수입 및 그에 대한 이자가 포함됩니다.

위 금액에 추가로, D 그룹 피해자에게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과 법률비용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D 그룹을 포함한 모든 상해 피해자 분들께는 현재 폐기능 손상도와 관계없이, 평생 동안 가슴기 살균제 관련 폐손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배상합의 후 5 년 이내에 건강상태가 중대하게 악화될 경우 배상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태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당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2017 년 12 월 14 일 또는 그 이전에 태아피해 인정을 받으신 아래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피해자 분들께 당사의 배상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임신 중 가슴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를 인정받은 자로서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에 대해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은 상해 피해자
- (2) 생존하여 출생하였으나 임신 중 가슴기살균제 노출로 인하여 출산 후 사망하였음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망 피해자

위 (1)에 해당하는 태아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배상규정상 어린이 상해 피해자에 준하여, 위 (2)에 해당하는 태아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배상규정상 어린이 사망 피해자에 준하여 배상금을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4. 귀하의 의견

본 안내문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피해자 및 그 가족 분들, 기타 이해관계자들께서는 다음의 의견수렴서를 작성하시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여러분의 고견을 고려한 후 피해자 및 가족 분들께 최종 업데이트된 배상규정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옥시레킷벤키저:

정부의 3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및 가족 분들 중 배상절차가 지연되신 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기 위한 의견 수렴서

옥시레킷벤키저는 귀하께서 그간 감내해 오신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올바른 일’을 하여,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고 당사의 배상안에 등록하신 피해자 및 가족 분들 중 배상절차 진행에 지연을 겪고 계신 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배상절차를 하루 빨리 재개하고자 제안 드린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와 공유할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의 ‘의견 수렴서’에 내용을 기입하시어 2018 년 5 월 23 일(수)까지 이메일(care@oxy.co.kr) 또는 팩스(02-761-21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배상을 재개하고 보완 사항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부 및 전문가들의 설명, 그리고 귀하의 고견을 적극 고려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 되면, 저희의 홈페이지(www.oxyrb.co.kr)에서 배상 규정, 등록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상절차가 재개되면,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쳐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시레킷벤키저 배상

의견 수렴서

- 날짜:
- 피해자 성함 (선택사항):
- 정부의 3차 조사에서 판정 받으신 피해 등급: 1 단계 / 2 단계:
- 피해자 정보: 사망 / 상해 | 어른 / 어린이:

정부의 3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분들 중 일부의 배상절차가 2017년 10월 이후 지연되었으며, 옥시레킷벤키저는 하루 빨리 이분들의 배상절차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귀하의 고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